

**주요공사(실내체육관건립, '94수해복구)에대한
행정사무조사 계획서**

주요공사조사특별위원회

주요공사(실내체육관건립, '94수해복구)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

1. 조사의 목적

-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천시 주요공사인 실내체육관 건립과 '94수해 복구공사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하자 부실공사로 인한 시민의혹을 해소시키고,
-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있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 재정 손실을 억제함과 아울러 제천시 종합운동장 하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시공업자와 관계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시켜 향후 추진하게 될 공사에 완벽한 설계 시공 및 지도 감독이 되도록하여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음.

2. 조사사안의 범위

- 집행기관의 제천실내체육관건립공사와 '94년도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의문점 등 공사 전반에 관한 하자 부실의 진상에 필요한 사항

3.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

- 조사위원회명 : 주요공사(실내체육관건립, '94수해복구)조사 특별위원회
 - 조사위원 위원장 : 장기 훈의원
 간사 : 의원
 위원 : 외 10 명의원
 - 조사반편성

구분	반 원	반 장	보조직원	조사대상공사	차량지원	비 고
제 1 반	엄태영위원 정상태위원 오중환위원 조남식위원 박연길위원	엄태영	전문위원1명 조성원	제천시실내체육관 건립공사	봉고차량1대	
제 2 반	윤장택위원 정용만위원 김병창위원 남기영위원 박종유위원	윤장택	전문위원1명 유관우	'94수해복구공사	봉고차량1대	

4. 조사방법

- 서류제출
 - 조사와 관련한 보고
 - 현장검증
 - 필요시 전문가를 초빙 자문
 - 증인 ◦ 참고인등의 증언청취
 - 질문및답변

5. 조사기간

- 조사기간 : '95년 9월 일(요일) ~
'95년 9월 일(요일) 일간

6. 소요경비

- 기본경비
 - 조사기간중 조사위원의 식비 및 간담회비
- 기타경비
 - 조사기간중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출장여비
- 예산과목
 - 의회비, 의회운영비, 지방의회운영, 의정활동, 의정공통운영, 보상금.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서류제출 목록
 - 행정사무조사 자료 제출 요구사항(별첨)
- 행정사항
 - 조사기간중 현장확인을 위하여 출장할시 관계공무원의 협조
 - 조사자료 제출서류는 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
 - 현장검증등 필요시 차량(봉고2대) 및 기사를 조사기간 동안 고정 배치